한양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의필 제2026-95호 (2026.09.07)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2026.09.14 개정)

※ 이 설명서는 한양증권(이하 : "회사")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제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7조의3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이하 "상품")의 매매(영 제6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는 제외)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료입니다.

※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미 수령 시 청약 또는 국내주식 주문이 불가합니다.

※ 고객님께서는 주식거래 前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

Ⅰ. 대체거래소(ATS) 개요

1. 대체거래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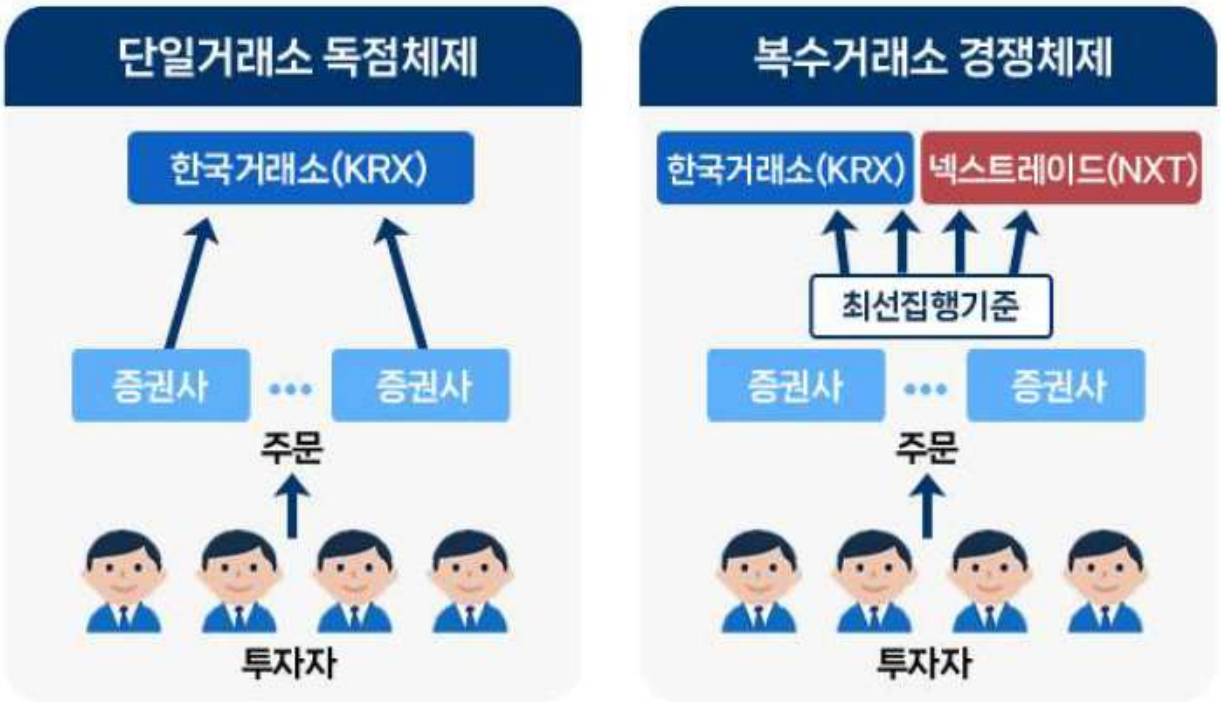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KRX")이외의 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정규거래소로서 금융상품의 매매, 결제 및 청산 외에도 상장, 시장감시 등의 시장관리 및 감독기능이 있지만, 대체거래소는 금융상품(상장주식 및 상장주식과 관련한 예탁증서)의 매매/중개만 가능합니다.

25년 3월 대체거래소 인가를 받은 (주)넥스트레이드(이하 "NXT")가 출범하며, 복수거래소 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합니다.

2. 대체거래소(ATS)NXT 출범 전후 변화

[대체거래소(ATS) NXT 출범 전/후 주문 과정 변화]



[대체거래소(ATS) NXT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 NXT 종가매매 접수는 15:00~16:00, 체결은 15:30~16:00
(KRX 장전/장후 시간외종가 및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현행과 동일)

※ NXT 애프터마켓 15:30~15:40 사이에는 호가접수만 가능(체결은 15:40 이후)

[KRX 애프터마켓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구분		현행	→	9.14 이후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	08:30~08:40	→	현행 유지
	대량·바스켓(협의대량 포함)	08:00~09:00	→	현행 유지
	경쟁대량	08:00~09:00	→	현행 유지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	15:40~16:00	→	현행 유지
	대량·바스켓(협의대량 포함)	15:40~18:00	→	15:40~20:00
	단일가	16:00~18:00	→	삭제
	애프터마켓	신설	→	16:00~20:00

Ⅱ. 최선집행기준 개요 및 주요 용어

1. 최선집행기준 개요

가격, 거래비용, 규모,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회사의 기준으로, SOR*주문은 최선집행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 SOR(Smart Order Routing) : 각 시장별 거래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동 주문 전송시스템

2. 최선집행기준 관련 주요 용어 (영 §66의2② 관련)

1) 통합호가와 주문유형

가. 통합호가란 고려대상시장(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한 1개 이상의 거래 집합시장으로 거래소, ATS (대체거래소)를 의미)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통합한 호가입니다.

나. 주문유형

①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Order Book) 내 기존 물량 (호가 잔량)을 이용하여 즉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 (예시) 시장가 주문(Market Order)는 기존 물량 체결 주문에 해당 등

②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 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입니다.

* (예시) 지정가 주문(Limit Order, 투자자가 대상 증권의 가격과 수량 등을 지정하게 되는 주문) 중 즉시 체결되지 않은 물량은 신규 물량 조성 주문으로 남게 됩니다.

※ 단, 시장가 또는 지정가 주문 시 한가지 유형이 아닌 Taker Order와 Maker Order가 혼합된 유형으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최선의 거래조건 관련 용어

가. 상품의 가격

최선의 거래조건 집행을 위한 "상품의 가격"이란, 투자자의 상품매매를 위한 통합호가창에서의 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나.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란, 주문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중 주문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는 명시적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거래비용"이라 합니다.

② 암묵적 비용이란 사전적으로 요율이 확정된 명시적 거래비용 외의 비용(시장충격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다. "규모"란 개별 주문의 규모이며, 매수주문 수량 또는 매도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라. "총금액"이란 가격,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하 '거래비용'), 규모를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반대급부로 투자자가 지불(수취)하게 되는 "총비용 (총대가)"입니다.

① "총비용"이란, 매수주문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수 금액으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의 합*"으로 합니다.

* 매수시 총비용 = [(주당 가격× 매수수량) + 거래비용]

② "총대가"란 매도주문 시 투자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도 금액으로 "매도금액과 거래비용의 차*"로 합니다.

* 매도시 총대가 = [(주당 가격× 매도수량) - 거래비용]

※ 총금액 판단시 고려하는 거래비용은 투자자가 주문시점에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회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실제 납부하게 될 거래비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 매매체결 가능성

주문이 집행되어 실제로 매매체결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회사별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Ⅲ.3.2. 나 신규 물량 조성 주문 참고)

Ⅲ. 최선집행 세부 기준

1. 적용 대상 증권의 범위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ETN)

2. 회사의 대상 집행시장

1) 집행시장의 선택

가. 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1.에 해당하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모두 주문집행 시장으로 합니다.

나. 가. 에 대한 회사의 주문집행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이하 'KRX')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넥스트레이드) 개설 증권시장(이하 'NXT')

2)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가. 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할 때마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배분할 시장을 판단합니다.

나. 일부 집행시장에서 접속매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최선집행의무를 수행할 시장의 선택은 회사의 운영방침을 따릅니다.

3.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1) 최선집행기준의 세부 고려사항

가. 상품의 가격

나.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다. 매매체결 가능성

2) 최선집행기준 [정규시장(KRX)/ 메인마켓(NXT)]

구분	내 용	주문 분할여부
가. 기존물량 체결주문 (Taker Order)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문시점의 주문수량이 전부 체결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복수 거래소의 거래조건 중 "총금액(총비용, 총대가)"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분할]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Split)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 신규물량 조성주문 (Maker Order)	투자자의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수 거래소의 거래조건 중 "매매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으로 우선 집행합니다. 매매체결 가능성은 주문시점의 거래참여 시장의 호가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① 동일방향 호가의 거래량 대비 누적잔량*이 유리한 집행시장(잔량의 비율이 작은시장) * 누적잔량 : 원칙적으로 호가참조깊이(10호가)로 하되, 호가참조 깊이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문가격까지의 호가를 참조 ② 상대방향 호가의 거래량 대비 잔량*이 유리한 집행시장(잔량의 비율이 큰 시장) * 거래량 대비 잔량 : 호가참조깊이 범위 내 전체잔량	[비분할] 주문 집행 시 거래소가 분할되지 않습니다.
다. IOC 주문	주문 유형중 IOC조건이 부여된 주문의 경우,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최선 가격을 고려한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 비율에 따라 양 거래소에 주문수량을 배분 및 집행합니다.	-

1) 기존 물량 체결주문과 신규물량 조성주문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상기 기존물량 체결주문기준을 적용한 후, 신규물량 조성주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각 거래소의 모든 거래조건이 동일하거나, SOR 판단이 불가한 경우 시장의 유동성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우선지정거래소(KRX)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3)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의해 SOR 주문정정은 전체 미체결 잔량 취소 후 신규 SOR주문으로 집행합니다. 이때 신규주문에 대한 거부 사유 발생 시, 해당 SOR 원주문은 취소되므로 투자자는 주문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간대별 최선집행기준

시장 구분	매매 거래시간	KRX 매매체결방식	NXT 매매체결방식	최선집행기준에 의한 집행시장 선택
프리 마켓	08:00~08:30	-	접속매매	NXT
	08:30~08:50	단일가 매매	접속매매	NXT
	08:50~09:00 (NXT-08:50 ~ 09:00:30)	단일가 매매	휴장	KRX
메인 마켓	09:00~15:20 (NXT-09:00:30 ~ 15:20)	접속매매	접속매매	SOR주문에 따라 판단된 시장 (분할/비분할)
	15:20~15:30	단일가 매매	휴장	KRX
NXT 애프터마켓	15:30~15:40	-	단일가 매매	NXT
	15:40~16:00	-	접속매매	NXT
NXT 애프터마켓	16:00~20:00	접속매매	접속매매	SOR주문에 따라 판단된 시장 (분할/비분할)
KRX 애프터마켓	16:00~20:00			

4) 양 집행시장의 매매체결방식이 '단일가 매매'인 경우의 주문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일가 예상종료 시간이 빠른 쪽으로 배분

나. 모든 거래소의 단일가 매매종료 예상시간이 15:20을 초과한 경우 KRX로 배분

IV. 최선집행기준적용 예외

1. 최선집행기준 적용 일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로부터 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집행에 관한 투자자의 별도지시가 있는 경우(Opt-Out)에는 투자자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집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 투자자는 주문화면에서 거래소(KRX ,NXT) 선택을 통한 별도지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를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의 최선집행 기준에 따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일임계약 등이 근거한 집행

투자일임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 등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최선집행기준보다 우선됩니다.

3) 거래 약관 또는 계약 등에 있어서 집행 방법을 특정하는 거래 : 당해 집행 방법

4) 기타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사항

구 분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 이유
예약주문	KRX 장 개시전 주문 제출 시 유동성 저조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과 거래량 한도를 규정한 법령 준수로 인한 주문 불가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KRX로 주문을 진행합니다.
복수계좌주문 복수종목주문 호가클릭주문 주식 STOP/LOSS주문	전산 부하로 인한 주문 및 체결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KRX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권리공매도 주문	KRX 또는 NXT로 거래소를 선택하여 주문을 집행합니다.
반대매매, 대주 주문	유동성 저조로 인한 급격한 가격변동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KRX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SOR 주문 中 FOK 조건 주문	양 거래소 간 체결가능 잔량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므로 고객님의 체결수량 지정의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KRX 또는 NXT로 거래소를 선택한 주문으로만 가능합니다.
기타예외사항	NXT에서 거래되지 않는 증권은 KRX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2. 최선집행기준 적용 특별 예외

① 회사는 집행시장 및 회사 시스템 장애, 집행 시장 판단 불가,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SOR 주문은 상대적인 거래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KRX로 집행합니다.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집행 시장의 장애 발생 시

- 정상집행시장으로 주문 집행

2. 특정 집행시장의 시장조치에 따른 거래 불가 시
 - 정상집행시장으로 주문 집행
3.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가. 장애가 해소되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우선집행 거래소인 KRX로 주문 집행
 나. SOR 장애 시 회사는 이미 전송된 주문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장애 해소 후 취소된 주문을 재전송하지 않음

3. 결과 책임 미귀속

회사의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절차상의 책임입니다. 회사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그 주문 결과의 책임은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Ⅴ. 그 외 최선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공표 의무(영§66의2③, ⑤)

1) 회사는 3개월마다 Ⅲ.3.2)최선집행기준 [정규시장(KRX)/ 메인마켓(NXT)])을 점검하고, 이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공표하거나 또는 1)에 따라 그 변경사실(변경 이유를 포함한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모두 활용합니다.
 가. 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설명서 교부의무(법§68④, 영§66의2⑥)

1)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 또는 청약을 받는 경우 미리 문서, 전자문서(전자우편, 알림톡(SMS), 매체 팝업 등), 팩스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Ⅴ.1.1)에 따라 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이 기재된 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한, Ⅲ.3.2)최선집행기준[정규시장(KRX)/메인마켓(NXT)]이외의 부분이 변경된 경우는 Ⅴ.1.2)의 방법으로 공표합니다.

3) 본 설명서가 미 교부된 고객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68조 제4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로서 주문(청약) 접수가 불가하므로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 제공 의무 (영 §66의2④, 금투협규정 §4-17①)

1)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가. 서면, 전화, 알림톡(SMS), 전자우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제공합니다.

나. 서면 등에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①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②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③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다. 투자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나.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4. 기록·유지 의무 (영 §66의2⑦, 금투협규정 §4-17②)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10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VI. 고객유의사항

□ 동 설명서는 시장 상황, 관련 업계와 협의, 사례의 누적,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설명서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부(02-3770-5000), 고객센터(1588-2145) 및 당사 홈페이지(www.hygood.c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